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30.

발 의 자 : 황운하·차규근·백선희  
정혜경·윤종오·손 솔  
서왕진·이훈기·김재원  
용혜인·신장식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,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.

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렵고,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 시 초기 방역과 격리 및 치료를 수행할 거점 의료체계가 취약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임.

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,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항 이용의 생명과 안전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4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5.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·운영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제1호부터 <u>제4호</u>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</p> <p>6. ~ 9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0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·운영</u></p> <p>6. -----<u>제5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7. ~ 10. (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